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 (제정일괄)

◇ 행정규칙명

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

◇ 제 · 개정 이유

「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9)」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「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」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표 내용 중 "공장 또는 창고(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)"를 "공장"으로 한다.(제4조제1항제1호)

나.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.